

판 결

사 건
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
된 죄명 사기)

피 고 인

검 사

변 호 인

변호사 조효동(국선)¹⁾

판 결 선 고

주 문

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.